

제 5 장 사생활 침해 사례

❖ 사 례 31

육군 부사관이 신청인 여고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.

사 건 2014서울조정709 손해청구
신 청 인 김○○ 외 1인
피신청인 주식회사 연합뉴스
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
접 수 일 2014. 5. 23.

사건개요

-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육군 부사관이 한 고교의 기숙사에 침입해 운동선수인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하다가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.
- 이에 대해 성폭력사건 피해자인 신청인들은 신분, 소속 등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200,000,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 한편 신청인들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 전제한 세계닷컴, 인터넷 MTN 등 7개 매체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.
- 심리 결과, 피신청인이 해당 기사는 조정신청 직후 즉각 삭제하였다는 입장을 개진한 후, 추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포털에 남아있는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금 각 2,000,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. 또한, 연합뉴스를 전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기사 삭제 및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.

조정대상보도

- 연합뉴스 - 『부사관이 ○○부 여고생 기숙사 들어가 성추행·절도』 제하의 기사
(2014년 4월 7일자 속보면)

- **내 용** - 육군 부사관이 ○○부 여고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 들어가 성추행을 하다가 코치 교사에게 붙잡혔다.

경기 연천경찰서는 7일 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박모(23) 하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.

박 하사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연천지역의 한 고교 기숙사 2층에 창문을 통해 침입,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(17)들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성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서랍과 사물함을 뒤져 7만 9천원이 든 여고생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.

박 하사는 성추행 사실이 발각되자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나려고 하다가 ○○부 코치 교사와 남학생들에게 붙잡혔다.

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하사를 현장에서 체포했다.

2층 기숙사에는 ○○부원 여고생 3명이 지내고 1층에는 ○○부원 남자 고교생들과 코치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조정신청취지

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한다.

사건처리결과

조정성립

조정성립사항

1.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2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, 그 지급기한은 2014년 6월 27일로 한다.
2.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.
3. 피신청인은,
 - 가. 2014. 6. 11. 10:00부터 조정대상기사가 연합뉴스 홈페이지(<http://www.yonhapnews.co.kr/>)에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,
 - 나. 피신청인과 계약을 맺고 기사를 전채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2014년 6월 17일까지 조치를 완료하며,
 - 다. 2014년 6월 17일까지 피신청인과 계약을 맺고 기사를 전채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“조정대상 기사 내용이 해당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웹문서, 카페 등에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”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통지한다.
4.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100만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.
5.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한다.
 - 연합뉴스는 2014년 4월 7일자 “부서관이 ○○부 여고생 기숙사 들어가 성추행·절도”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특정될 수 있게 보도했을 뿐 아니라 신청인들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 연합뉴스는 향후 유사한 보도를 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보도로 인해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6.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2014. 06. 10.

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

손해배상금 4,000,000원 지급

